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위탁 제한조항을 삭제하여 위탁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위탁의 제한조항 삭제(안 제20조)

- 수탁자 1명에게 1개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8272('17. 9.11.)]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 없음 [주민복지과-53801('17. 9.29.)]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'17. 9.21. ~ '17.10.11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위탁의 제한) 군수는 동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.	<삭 제>